

서울특별시 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1월 15일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



1. 제안이유

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유아 숲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, 우리 구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므로,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
나. 유아숲체험원 조성·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.

다.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
라.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(을지로6가 18-14) 의회사무과
- 전화 : 02)3396-8157 팩스 : 02)3396-9055
- E-mail : mnslove@junggu.seoul.kr

서울특별시 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유아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.
2. “유아 숲 교육”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.
3. “유아 숲 교육시설”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“유아숲체험원”을 말한다.
4. “유아숲지도사”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,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유아숲체험원 조성·운영 등)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(이하 “체험원”이라 한다)을 조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,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원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추진 등)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유아 숲 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

2. 유아 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
3.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4.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
5.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, 방법 및 조건 등은 「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,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